

[www.i-sh.co.kr](http://www.i-sh.co.kr)

2020년  
대학생 희망하우징(공공기숙사)  
**잔여세대 입주자모집**

2020.12.10.

**ISH** 서울주택도시공사





# 2020년 대학생 희망하우징(공공기숙사) 잔여세대 입주자모집

-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- 잔여세대 입주자모집은 기존 주택에서의 미입주, 입주 중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기 위한 모집공고입니다.
- **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(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,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)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
- **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0.12.10.(목)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,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시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.**
-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전송하므로 **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**하기 바라며,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1

## 공급개요

### 공급일정

입주자 모집공고	주택 공개	인터넷 신청접수	서류제출	당첨자 발표	계약 체결	입주
2020. 12.10.(목)	2020. 12.14.(월) ~ 12.15.(화)	2020. 12.16.(수) 10:00 ~ 12.18.(금) 17:00	2020. 12.22.(화) ~ 12.24.(목)	2021. 03.19.(금)	2021. 03.29.(월) ~ 03.31.(수)	2021. 04.09.(금) ~ 06.09.(수)

- ※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※ 주택공개 시간 : 10:00 ~ 16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- ※ 인터넷 신청접수 : 2020.12.16.(수) 10:00 ~ 2020.12.18.(금) 17:00
- ※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: 2020.12.21.(월) 예정
- ※ 서류제출 : 서류심사대상자에 한정, 등기우편 제출
- ※ 서류심사 및 소득·자산 조회(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) : 약 6~7주 소요
- ※ 소득·자산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

## ■ 공급대상 : 희망하우징(공공기숙사) 잔여세대 47호

※ 공급주택 상세목록은 [첨부] 주택목록 참고

주택명	소재지	주택유형	성별	공급호수
합계		원룸형	남성	20
			여성	12
		쉐어형 (2인실)	남성	8
			여성	7
연남 공공원룸텔	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길 79 (연남동 487-35)	원룸형	남성	5
			여성	1
정릉 희망하우징	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99 (정릉동 380-3)	원룸형	남성	13
			여성	9
		쉐어형 (2인실)	남성	8
			여성	7
내발산 공공기숙사	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 (내발산동 740)	원룸형 (장애인 전용)	남성	2
			여성	2

### ● 연남 공공원룸텔

- 호실형태 : 원룸형(1호 1인)
- 전용면적 : 13.4㎡
- 공급호실 : 6호(남5 / 여1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길 79
- 인근 지하철역 : 경의중앙선 가좌역
- 인근 대학교 : 연세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, 홍익대학교, 서강대학교, 명지대학교

### ● 정릉 희망하우징

- 호실형태 : 원룸형(1호 1인), 쉐어형(1호 2인)
- 전용면적 : 14.23㎡
- 공급호실 : 원룸형 22호(남13 / 여9), 쉐어형(2인실) 15호(남8 / 여7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99
- 인근 지하철역 : 우이선경전철 북한산보국문역(서경대)
- 인근 대학교 : 서경대학교, 국민대학교, 고려대학교

### ● 내발산 공공기숙사

- 호실형태 : 원룸형(1호 1인)
- 전용면적 : 23.26㎡
- 공급호실 : 4호(장애인 전용, 남2 / 여2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
- 인근 지하철역 : 5호선 마곡역

- ※ 전용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각 호실의 면적입니다.
- ※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차지원 불가합니다.
- ※ 최초 공급 시 지정한 성별에 따라 재공급하는 것으로, 성별 간 공급 호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※ 정릉 희망하우징의 경우 현재 쉼어형(2인실) 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므로 원룸형 공급대상 호실이더라도 주택방문 시 쉼어형(2인실) 형태의 호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.(입주 시점 이전 원룸형 호실로 전환 완료 예정)
- ※ 정릉 희망하우징 주택 중 쉼어형(2인실) 공급대상 호실은 현재 1명의 입주자가 존재하는 호실로서 2년 단기임대 형태로 신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(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) 단, 계약만료 이전 시점에 1인실 전환에 동의하고 원룸형 주택의 잔여공가가 있을 경우 원룸형 주택의 임대조건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

## ■ 임대기간

### ● 계약기간 : 2년

- 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(최장 6년 거주)합니다.
- 정릉 희망하우징 쉼어형(2인실) 주택은 최초 계약기간 2년 이후 재계약이 불가합니다, 단, 계약만료 이전 시점에 1인실 전환에 동의하고 원룸형 주택의 잔여공가가 있을 경우 원룸형 주택의 임대조건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(최장 6년 거주)합니다.
- 계약기간 중 퇴거 시 2년 거주로 간주하며, 이후 희망하우징 주택을 재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거주기간을 누적하여 산정(누적 거주기간 최장 6년 가능)합니다.

### ● 재계약

- 무주택자(본인) 조건 및 대학생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
- 대학생이 휴학 중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나, 졸업(수료) 시에는 재계약이 불가(잔여기간 거주 가능)합니다.
- 재계약 시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■ 임대조건

- 시중시세(감정평가액)의 30% 수준으로 공급하며,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.
- 월임대료는 전체 임대기준금액에서 임대보증금(100만원)을 제외한 금액을 전환이율(6.7%)로 전환하여 산정합니다.
-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(상호전환)은 불가합니다.

주택명	임대보증금	월임대료	
연남 공공원룸텔	100만원	133,300원	
정릉 희망하우징	100만원	원룸형	83,400원
		쉼어형(2인실)	58,100원
내발산 공공기숙사	100만원	100,000원	

※ 임대료 외에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(관할센터 문의)



### ■ 공통사항

- 주택공급신청자는 **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2.10.)** 현재 **무주택자(본인)**이면서 **미혼(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)**인 **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**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, 총자산,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 
**※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** :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(전문대 포함)에 재학 중(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포함)인 학생
-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라 판단합니다.
- **1인 1주택**만 신청가능하며, **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** 처리됩니다.
- **신청자격**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,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**자격요건 상실** 시 **당첨이 취소**되거나 **계약이 거절**될 수 있습니다.

### ■ 특이사항

- **내발산 공공기숙사**의 경우 장애인 전용호실로서 **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2.10.)** 현재 신청자 **본인이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**이어야 합니다.
- **대학생 관련 세부기준**

<b>인정 대학교 기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 등)</li> <li>□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(전공대학)</li> <li>□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</li> <li>※ 단, 원격대학(방송대학 · 통신대학 · 방송통신대학 · 사이버대학 등), 사내대학, 학점은행제대학, 대학원, 대학원대학은 제외</li> </ul>
<b>기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<b>졸업유예(수료)자 · 대학원생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음</b></li> <li>□ <b>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(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)만 대학생 기준 충족</b></li> <li>□ 복학예정자(입학예정자)는 휴학증명서(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) 및 각서를 제출하고 복학(입학) 후 즉시 재학증명서 제출(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)</li> <li>□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</li> <li>□ 재학 중인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</li> </ul>

## ■ 순위 요건

순위	자격	상세 요건
1순위	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가구	<input type="checkbox"/>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※ 수급자 인정 가구원 범위 : 신청자 본인 및 부모
	한부모 가족	<input type="checkbox"/>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
	차상위계층 가구	<input type="checkbox"/>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※ 차상위계층 인정 가구원 범위 : 신청자 본인 및 부모
2순위	일반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(총자산 28,800만원 이하, 개별 자동차 2,468만원 이하)
3순위	일반	<input type="checkbox"/> 1,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(대학생)의 자산기준을 충족 (총자산 7,800만원 이하, 개별 자동차 무소유)

## ■ 소득금액 기준

기준	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(원)	50%이하	1,322,574	2,189,905	2,813,449
	100%이하	2,645,147	4,379,809	5,626,897

-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, 소득, 총자산,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.
- 1순위의 수급자, 차상위계층 인정 가구원 범위 및 2순위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, 소득·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. (3순위의 경우 1인가구 기준,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심사)
-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를 제외한 형제·자매 및 기타 가구원은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·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□ 주택공급신청자의 **부모 이혼 시**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**부모 중 1명만 가구원에 포함,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**이 됩니다.

-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
-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(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)하는 부 또는 모

## ■ 가점사항 및 입주자선정 우선순위

### □ 가점사항

적용 대상	가점 항목	내용	가점
1 순위	①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	3
	② 한부모 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	3
2, 3 순위	③ 소득기준 50% 이하	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% 이하인 경우	3
공통	④ 부모 무주택	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	2
	⑤ 타지역 출신	서울특별시 이외의 시·군 출신 (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)	2
	⑥ 민간임대주택 거주자	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·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※ 민간임대주택 : SH,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제외	1
	⑦ 장애인(본인)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본인)인 경우	2
	⑧ 장애인 가구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	1

### □ 입주자선정 우선순위

- 순위 ⇒ 가점사항 총점 ⇒ 가점사항 우선순위 ⇒ 추천

-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순위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.
-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,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-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



### 주택공개

공개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2020.12.14.(월) - 2020.12.15.(화) [공개시간 : 10:00-16:00, 점심시간 12:00-13:00 제외]
공개절차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개기간 중 관할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방문 희망 일시를 협의 후 해당주택을 방문해야 합니다. (개별 임의 방문 불가) ※ 정릉 희망하우징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유선 연락하여 방문 일시 협의 후 방문 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관할센터 및 관리사무소 연락처 : 「추가 안내」 참고
유의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,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불가능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 공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### 신청접수(인터넷 청약)

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2020.12.16.(수) 10:00 - 2020.12.18.(금) 17:00
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인터넷 청약 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i-sh.co.kr)에 접속 → 인터넷 청약 시스템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공고선택 → 단지 선택 → 신청자격 확인 →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→ 가점사항입력 →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→ 나의 청약내역 확인
유의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. (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)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기관(인터넷뱅킹) 및 6대 인증기관(금융결제원, 코스콤, 한국정보인증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, 이니텍)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. (잘못된 연락처 입력이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(저장)하여야 하며,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

※ 서류심사대상자에게 별도 등기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및 신청 접수 시 기입한 연락처로 문자(SMS)를 발송

서류심사 대상자 발표	일시	□ 2020.12.21.(월) 예정
	방법	□ 문자(SMS) 전송 및 홈페이지(공지사항) 명단 게시(등기 안내문 발송×) □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/ ARS 조회
	선정 기준	□ 신청 시 기입한 사항을 바탕으로 공급호수의 3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음 전형을 진행합니다. □ 순위 간 경쟁이 있을 시 상위순위를 우선 선정하며, 3배수 내 동순위 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순위 신청자는 별도의 추첨 없이 모두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.
서류제출	기한	□ 발송 : 2020.12.22.(화) - 2020.12.24.(목) 이내 소인 분 인정 □ 마감 : 2020.12.29.(화) 도착 분까지 인정
	방법	□ 등기 우편 제출 (방문제출, 일반우편 제출 불가)
	주소	□ (06336)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형주택부 희망하우징 담당자 앞
	유의 사항	□ 등기우편 외의 방법(일반우편 포함)으로 접수 불가하며, 제출 기간 이외 소인 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 (별도 안내 없이 탈락) □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. □ 서류 부족 제출자의 경우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로 전화 1회, 문자 1회 발송 후 연락 불가 시 탈락 처리합니다. □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. □ 공급부서를 제외한 콜센터, 관할센터 등을 통한 단순 전화 상담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격조건 및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□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□ 제출서류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접수기간 이후 순위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. □ 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 발급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제출서류
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 후 반납하지 않음  
(탈락자 서류는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)

### 공통 제출서류

#### □ 신청자 전원 제출

제출 서류	내용	발급
대학생 자격증명 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학생 : 재학증명서 (재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) <input type="checkbox"/> 휴학생 : 휴학증명서, 공사양식 각서(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), 재학증명서(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) <input type="checkbox"/> 입학예정자 :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, 공사양식 각서(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), 재학증명서(입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)	- 해당교육기관 - 불임양식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자 본인 (정자체)서명 <input type="checkbox"/> '부모 무주택 가점', 혹은 '타지역 출신 가점' 해당자는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(정자체)서명 -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㉠ 부모와 세대 분리 시 : 분리된 부, 모 모두 포함 ㉡ 부모 이혼 시 :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(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)하는 부 또는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	- 불임양식
주민등록등본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	- 주민센터
가족관계 증명서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발급)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) 표기되도록 상세발급	- 주민센터



## 자격별 제출서류

□ 본인의 신청 자격(순위 및 가점)에 따른 서류 제출

해당 자격	제출서류 및 내용	발급
(1순위) 생계·의료·주거 급여 수급자	□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※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	- 주민센터
(1순위) 보호대상 한부모가족	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	- 주민센터
(1순위) 차상위계층	□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서, 복지대상급여(변경)신청결과 통지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자활(급여) 대상자 확인서,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,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	- 주민센터
2, 3순위	□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제공 동의서 - 2순위 : 본인 및 부모의 (정자체)서명 - 3순위 : 본인의 (정자체)서명 -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③ 부모와 세대 분리 시 : 분리된 부, 모 모두 포함 ④ 부모 이혼 시 :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(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)하는 부 또는 모 ※ 반드시 “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” 및 “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” 란에 모두 서명	- 붙임양식
기타 가점사항 해당자	□ 장애인(본인) 및 장애인 가구 :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(반드시 등록일 기재) ※ 신청자 본인 및 부모에 한함 □ 타지역 출신 : 신청자 부모(모두)의 주민등록등본 □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: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	- 주민센터

※ 가점사항 중 '소득기준 50% 이하', '부모 무주택자' 여부는 보건복지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(별도 제출 서류 없음)

## 추가 제출서류

□ 신청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

제출 서류	내 용 (해당자만 제출)	발 급
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	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 이혼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되는 부 또는 모 기준 <b>혼인관계증명서</b> 제출(이혼내역 표기) ※ 심사대상 부 또는 모 기준은 [신청자격] 참조	- 주민센터
주민등록 말소자초본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제출	- 주민센터
장애인증명서 (장애인등록증)	<input type="checkbox"/> 내발산 공공기숙사(장애인 전용호실)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장애인증명서, 혹은 장애인등록증(등록일 기재) 제출	- 주민센터

### ■ 소득 및 자산 소명

일시	<input type="checkbox"/> <b>2021. 3월 중</b> [소득·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]
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소유,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
유의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에 한하여 진행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및 안내문을 송부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소유,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의 입주자격 기준을 초과한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,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 합니다.





### ■ 입주자 선정방법

입주자 선정방법	입주자 선정 우선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순위 → 가점사항 총점 → 가점사항 우선순위 → 추첨</li> <li>□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</li> <li>□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,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</li> <li>□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</li> </ul>
	당첨자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서류심사, 소득 및 자산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첨의 대상이 되며,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.</li> <li>□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신청 주택 별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이뤄집니다.</li> </ul>
	예비자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, 미계약·계약취소·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. (예비자 자격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)</li> </ul>

### ■ 최종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

일시	□ 2021.03.19.(금) 예정 [소득·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]
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 게시 및 SMS(문자) 발송</li> <li>□ 홈페이지 당첨자 조회 / ARS 조회</li> <li>□ 당첨자 계약안내 서류 및 계약금고지서 등기우편 발송</li> </ul>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서류심사대상자 전원에게 발표 사실을 문자(SMS) 안내하며, 최종 당첨자에게는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.</li> <li>□ 전산 무작위추첨에 따라 배정된 호실 이외(공실여부 관계없음)로 호실 변경 입주는 불가합니다.</li> <li>□ 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사유가 있을 시 추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합니다.</li> </ul>



### 2차 주택공개(최종 당첨자 대상)

공개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2021.03.29.(월) - 2021.03.30.(화) [공개시간 : 10:00 - 16:00, 12:00 - 13:00 점심시간 제외]
공개절차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개기간 중 관할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방문 희망 일시를 협의 후 해당주택을 방문해야 합니다. (개별 임의 방문 불가) ※ 정릉 희망하우징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유선 연락하여 방문 일시 협의 후 방문 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관할센터 및 관리사무소 연락처 : 「추가 안내」 참고
유의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입주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당첨된 주택만 확인 가능합니다. (당첨 주택 외 타주택 방문이나 입주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 불가)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 공개 일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### 계약

일시	<input type="checkbox"/> 2021.03.29.(월) - 2021.03.31.(수) [계약시간 : 10:00 - 17:00, 12:00 - 13:00 점심시간 제외]					
장소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형주택부 (3호선 대청역 8번 출구)					
계약체결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 시 구비서류(아래) 지참 후 방문계약 <input type="checkbox"/> 등기 발송된 고지서 상의 당첨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계약금 납부 증빙자료 지참하여 방문 (계약 시 공사에 계약금 납부 불가)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, 제3자(대리인)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					
구비서류	계약자 본인 내방 시	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(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)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(인터넷 뱅킹) ④ 쾌적한 주거환경 이행 유지각서(공사 소정양식) ⑤ 서약서(무주택 및 당첨자격 확인 서약) ⑥ 주택사전점검표(서명 포함)				
	직계가족 또는 제3자(대리인) 내방 시	위의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(①~⑥) 외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직계가족 대리 시</td> <td>           ㉠ 대리인 신분증            ㉡ 계약자 신분증            ㉢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제3자(대리인) 대리 시</td> <td>           ㉣ 대리인의 신분증            ㉤ 위임장(계약자의 인감 날인) 1통            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       </td> </tr> </table>	직계가족 대리 시	㉠ 대리인 신분증 ㉡ 계약자 신분증 ㉢ 가족관계증명서	제3자(대리인) 대리 시
직계가족 대리 시	㉠ 대리인 신분증 ㉡ 계약자 신분증 ㉢ 가족관계증명서					
제3자(대리인) 대리 시	㉣ 대리인의 신분증 ㉤ 위임장(계약자의 인감 날인) 1통 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					

## 입주

기간	□ 2021.04.09.(금) - 2021.06.09.(수), 두 달간
안내	<p>□ 관할 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.</p> <p>□ 계약 시 수령한 잔금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, 반드시 입주일 2주(14일) 이전 해당지역 관할 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를 협의해야 합니다.</p> <p>□ 금융권 대출 관련 사항은 공사에서 관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□ 공사에서 별도 대출을 시행하지 않으며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 수정(동호 및 면적)은 불가합니다.</p>

## 6

## 추가안내

### 연락처

주택명	관할 센터	전화번호
	주소	
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	-	1600-3456
내발산 공공기숙사	강서센터	(02)2657-8100~1
	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밸리 10단지 M-Tower(오피스동) 2층	
연남공공원룸텔	마포용산센터	(02)380-0100~1
	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(기업은행 마포역지점) 10층	
정릉 희망하우징	성북강북센터	(02)944-8000~1
	정릉 희망하우징 관리사무소	(02)909-0872
	성북구 화랑로 35 KT월곡빌딩 3층	

###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안내

주택명	사용구분	위치	설치시설 및 부대시설
정릉 희망하우징	부대시설	4층	세탁실, 휴게실(여)
		3층	휴게실(남)
		2층	세탁실(남)
	실별 사용	에어컨, 주방(냉장고, 전기쿡탑), 화장실, 침대, 책상·의자, 옷장	



주택명	사용구분	위치	설치시설 및 부대시설
연남 공공원룸텔	부대시설	1층	세탁실
	실별 사용		냉장고, 전기쿡탑, 화장실, 책상·의자, 옷장

## ■ 금융자산 조회 안내

- 「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」의 시행(2016.12.30.)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'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'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

구분		안내 사항
동의서 수집 사유		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
동의서 서명 대상		소득재산 조사대상 가구원 전원(2순위 : 본인 및 부모 / 3순위 : 본인) 서명
서명	정보 제공 동의	금융기관에 조사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
	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	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
동의서 유효기간 등		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

## ■ 소득 및 자산 출처(사회보장정보시스템)

구분	항목	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	자료 출처
소득	상시근로 소득	-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	- 건강보험 보수월액 -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(소득신고) - 장애인고용공단자료 (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/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: 근로소득) - 국세청종합소득(근로소득)
	근로 소득	-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- 건설공사종사자(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) - 하역(항만)작업 종사자(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)	-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
	자활근로 소득	- 자활근로, 자활공공근로, 자활공동체사업, 적응훈련,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	- 자활근로자 근로내역
	공공일자리 소득	- 노인일자리사업, 장애인일자리사업,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	- 노동부 '일모아' 근로내역
사업 소득	농업소득	- 경종업(耕種業), 과수 원예업, 양잠업, 종묘업, 특수작물생산업, 가축의 사육업,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	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 -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-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* 농업소득=국세청 종합소득+농업직불금

구분	항목	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	자료 출처
소득	사업 소득	임업소득	-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
		어업소득	-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
		기타사업 소득	- 도매업·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 - 사업자등록증
	재산 소득	임대소득	- 부동산·동산·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
		이자소득	- 예금·주식·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
		연금소득	- 민간 연금보험,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
기타 소득	공적이전 소득	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금품(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) - 국민연금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국방부퇴직, 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,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,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,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	
총 자산	일반 자산	토지, 건축물 및 주택	- 토지(지방세법 제104조제1호~3호) :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- 건물(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) :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- 시설물(지방세법 제6조제4호) :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, 접안시설, 도관시설, 급 배수시설, 에너지 공급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(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) -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,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(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) - 지방세정 자료
	자동차	-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(제124조)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 -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	
	기타 자산	임차보증금	- 주택,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(전세보증금, 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 등) -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- 직권조사 등록
		선박·항공기	- 선박 :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- 항공기 :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·비행선·활공기·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- 지방세정 자료
		입목재산	지상의 과수, 임목(林木), 죽목 등 입목(立木)재산 - 지방세정 자료
		회원권	- 골프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, 승마회원권, 요트회원권 - 지방세정 자료
		조합원 입주권	-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- 지방세정 자료
		어업권	-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- 지방세정 자료
	금융자산	분양권	-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) :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
		금융자산	- 현금 또는 수표, 어음, 주식, 국·공채 등 유가증권 - 예금, 적금, 부금, 보험 및 수익증권 등 - 금융정보 조회결과

구분	항목	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	자료 출처
총 자산	부채	- 금융기관 대출금	- 금융정보 조회결과
		-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	
		-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	
		-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	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
		- 임대보증금	
자동차	-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(제124조)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	-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	

자료 출처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

※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.

## ☐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

구분	총자산 기준
소득	<p>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소득 (상시근로소득, 일용근로소득, 자활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)</li> <li>• 사업소득 (농업소득, 임업소득, 어업소득, 기타사업소득)</li> <li>• 재산소득 (임대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)</li> <li>• 기타소득 (공적이전소득)</li> </ul>
총 자산	<p>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* 토지 : 소유면적 × 개별공시지가 * 건축물 : 공시가격</p> <p>-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. 단, 아래 토지는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농지법」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·읍·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</li> <li>• 「초지법」제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업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</li> <li>•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</li> <li>•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</li> </ul> <p>-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</li> </ul>
	<p>-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,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(단,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~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)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자 동 차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※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. 다만 자동차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.</li> <li>-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</li> <li>-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금 용 자 산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: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</li> <li>-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</li> <li>-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 : 최종 시세가액.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.</li> <li>-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 증서, 양도성예금증서 : 액면가액</li> <li>- 연금저축 : 잔액 또는 총납입액</li> <li>- 보험증권 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</li> <li>- 연금보험 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총 자 산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일 반 자 산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</li> <li>- 주택·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(전세금을 포함한다) :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</li> <li>-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</li> <li>-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</li> <li>- 「지방세법」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</li> <li>-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.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(이하 “기존건물평가액”이라 한다)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.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: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</li> <li>-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) :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</li> <li>- 공공기관 대출금</li> <li>-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</li> <li>- 법원에 의하여(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) 확인된 사채</li> <li>- 임대보증금(단,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)</li> </ul>



구분	유의사항
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1주택(실)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의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<b>전부 탈락</b> 처리합니다.</li> <li>- <b>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</b>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(순위나 가점 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,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)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<b>기한 내에 신청접수 및 서류 제출</b>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</li> <li>- <b>주소지 단위로 신청</b>가능하며 호실은 <b>전산 추첨</b>하여 <b>배정</b>하고, <b>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</b>되어 있습니다.</li> <li>-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또는 입학 예정자의 자격으로 신청한 자는 공사 양식 각서(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 서약) 및 재학증명서(복학 후 1개월 이내)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및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</li> <li>- 신청 시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로 등기우편과 SMS(문자)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<b>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</b>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-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<b>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</b>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, <b>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불가능</b>합니다.</li> <li>- <b>본인이 기혼자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</b>, 부모님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 심사를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.</li> <li>-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(본인)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준용합니다.</li> </ul>
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음 전형 진행이 가능하며, 서류미제출 탈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li>- 모든 서류는 <b>공고일 이후에 발급</b>된 것이어야 하며, 전형 종료 후 반납하지 않고 일괄 폐기 합니다.</li> <li>- <b>원본 제출이 원칙</b>이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.</li> <li>- 콜센터를 통한 단순 전화 상담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격조건 및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- <b>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</b> 처리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li>-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.</li> </ul>
소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에 한하여 진행되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송부합니다.</li> <li>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,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<b>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</b>처리됩니다.</li> </ul>

구분	유의사항
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발표일 이전에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으며 <b>모든 신청자의 전형 종료 후</b>(소명 절차 등) <b>일괄 발표</b>합니다.</li> <li>- <b>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</b>하며, 미계약·계약취소·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.(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)</li> </ul>
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 입주대상자라도 소득기준·자산기준·자동차기준 등의 <b>추가 소명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료하여야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.</b></li> <li>- 당첨자 발표 이후 <b>2차 주택공개(당첨자 대상) 시</b> 입주 대상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 <b>시설·설비 상태에 대한 사전점검표를 작성</b>하고 <b>계약 체결 시 제출</b>해야 합니다.</li> <li>- 계약금을 납부하고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미계약취소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신분증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하며, 입주지정 종료일 전까지 계약해지 신청하여야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(관할 센터에서 신청가능)</li> <li>- <b>최초 2년 계약 후 2회 갱신계약 가능(총 6년)하며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제외한 모집공고일 현재의 입주자격(무주택자, 대학생)을 재계약 시점에도 유지하여야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.</b></li> <li>- <b>정릉 희망하우징 쉐어형(2인실) 주택</b> 당첨자의 경우 <b>최초 2년 계약 후 갱신계약이 불가</b>합니다. (2년 단기임대)</li> <li>- 임대차 기간 중 <b>대학교를 졸업(수료)</b>하는 경우 <b>잔여 계약기간 동안 거주</b>가 가능하나 재계약은 불가합니다.</li> <li>- 희망하우징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(현재 거주자 포함)도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나 전체 임대차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(계약 1회 당 2년 거주 간주)</li> </ul>
입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떠한 경우에도 <b>신청자 본인만 입실</b> 가능합니다.</li> <li>- <b>본인이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</b>으로 희망하우징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. (최종 입주자 발표 후 해당자 별도 통보 및 입주 전 센터 최종 확인)</li> <li>- <b>신청자의 부모가 서울 소재의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신청자가 기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</b>으로 희망하우징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<b>금융권 대출</b> 관련 문의를 받지 않으며, 공사에서 별도 대출을 시행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- 대출을 위한 계약서 내용(동호표기 및 면적 등) 수정은 불가합니다.</li> </ul>
생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소음·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<b>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이전 등은 불가</b>합니다.</li> <li>- <b>공동생활 위해행위</b>(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, 향정신성 의약품 음용, 상습 음주 및 흡연,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,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, 동물을 키우는 행위, 도박,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,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행위 등)로 <b>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갱신계약이 거절</b>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이 있으니 계약 전에 관할센터를 통해 관리비 발생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

구분	유의사항
생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(고장)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·전대·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</li> <li>-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·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현방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이에 불응할 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</li> <li>- 주택의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,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, 「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」, 「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」 등 관련 법령과 고시·지침에 따릅니다.</li> </ul>

2020. 12. 10.



**ISH** 서울주택도시공사

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(개포동 14-5)  
[www.i-sh.co.kr](http://www.i-sh.co.kr)

**콜센터 1600-3456**